예 산 총 칙

201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871,620,020	26,148,601
일반회계	738,756,639	22,162,699
특별회계	132,863,381	3,985,901
공기업특별회계	67,519,919	2,025,598
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	67,519,919	2,025,598
기타특별회계	65,343,462	1,960,304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5,592,030	467,761
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	2,473,220	74, 19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,040,813	121,224
수질개선특별회계	49,000	1,470
농 어 촌 소 득 지 원 특 별 회 계	4,237,732	127, 132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	106,000	3,180
주택사업특별회계	9,725,000	291,750
농공단지특별회계	1,323,670	39,710
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	2,587,746	77,632
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	2,848,200	85,446
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	35,000	1,05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541,000	16,230
도시개발특별회계	21,784,051	653,522

- 제 2조 세입 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882,147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